

## 輸出検査制度의 現況과 簡素化方案 \*

### (A Study on the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the Export Articles)

李 相 鎔 \*\*  
趙 南 浩 \*\*  
金 斗 漢 \*\*\*

#### SUMMARY

It is worthwhile to know how the quality inspection is practised to assure the product quality for the export articles, and what problem is resulted from the current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the export articl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status of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the export articles and to design the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the export articles so as to not only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 system but also improve the product quality for the export articles.

To find out the facts the survey is conducted by sending a prepared questionnaire both to the export industries and to the export quality inspection agencie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export industries surveyed are selected to provide broad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the type of industry as well as to the size of company.

The survey shows that about 50 percent of the responding industries desire to discontinue the current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the export articles, and other 50 percent of them desire to continue it until all the export industries can make the best use of quality control techniques.

#### 1. 序 言

우리나라가 資原의 不足과 技術의 落后等 여러가지 어려운 与件을 克服하고 1977年度에 年間 100億弗의 輸出実績을 達成할 수 있게끔 발전하게 된 것은 1962年으로 부터 1976年에 이르기까지 3次에 걸쳐 實施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輸出振興을 위한 政府의 諸般 支援施策, 그리고 産業戰線에서 불철주야로 献身努力한 産業戰士들의 勞苦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山넘어 山이라는 俗談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驚異的인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100億弗 輸出의 一次的인 目標을 達成하게 되자 先進諸國은 모두가 우리나라를 輸出競争國으로 意識하고 우리 商品에 대한 輸入規制를 強化하는 등 여러가지로 保護貿易의 障壁을 쌓고 있는 것이 現狀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은 輕工業中心의 輸出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生産施設이나 技術

\* 本 研究課題는 77~78年度 産學協同財團의 研究推薦課題로서 同財團의 研究費에 의하여 이루어 진것임.

\*\* 建國大學校工科大学工業經營學科教授

\*\*\* 建國大學校工科大学工業經營學科助教

의 落后性を 豊富한 勞動力의 活用으로 어느 程度 克服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앞으로 重化学工業中心의 輸出構造로 轉換함에 있어서는 그 技術的, 經濟的 特性으로 인하여 輕工業時代의 方法으로는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새로운 決意로서 官界, 産業界, 學界가 三位一體가 되어 (1) 輸出市場의 擴大를 위한 新製品과 技術의 開發, (2) 品質의 高級化, (3) 生産能率의 向上과 原価低減等 모름지기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더욱 奮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막상 輸出市場의 開拓과, 擴大 및 國際競爭力 強化를 推進하고자 하니 이에 隨伴되는 세일즈맨과 技術人力의 不足, 生産施設의 不足, 技術의 低位, 輸出支援体制의 不合理等 相當한 問題點이 露呈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本論文은 輸出商品의 品質과 對外声價를 維持向上하고 健全한 輸出貿易政策을 助成하기 위하여 1962年 부터 施行하고 있는 우리나라 輸出檢査制度에 대하여 實際로 이 制度의 適用對象이 되고 있는 輸出業체와 또한 이 制度의 執行機關이 되고 있는 輸出檢査機關으로부터 이 制度施行上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合理的인 輸出檢査制度를 模索함으로써 現行 輸出支援 体制上의 不合理點을 改善하고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려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 2. 現行輸出檢査制度의 概要

우리나라의 現行輸出檢査制度는 1962年 10月 4日에 法律 第1164号로 制定公布된 輸出檢査法에 根拠하고 있다.

따라서 이 法에 根拠한 現行輸出檢査制度의 內容을 쉽게 把握하기 위해서는 (1) 輸出檢査를 받아야만 輸出할 수 있는 輸出檢査指定品目, (2) 輸出檢査를 簡素化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制定된 輸出檢査指定品目中 輸出檢査 免除特例, (3) 輸出指定品目別 檢査基準과 檢査方法, (4) 輸出檢査機關의 認可基準과 節次, (5) 輸出檢査節次와 手数料等 몇 가지 主要 內容으로 区分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를 理解하는데 容易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 現行 輸出檢査制度는 이러한 区分

에 따라 각기 施行規則과 節次가 細部的으로 規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 現行輸出檢査法에 의하면 輸出商品은 어느 것이나 輸出檢査를 畢하여야만 輸出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輸出商品으로서 品質(包裝條件包含)의 維持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指定檢査機關의 輸出檢査를 받지 아니하고는 輸出할 수 없도록 商工部令으로 指定된 物品에 限하여서만 輸出檢査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 輸出檢査를 行할 수 있는 檢査機關도 商工部令으로 定해진 要件을 具備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獲得한 指定檢査機關이라야만 輸出檢査를 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輸出檢査指定品目の 現況과 問題點

現在 輸出檢査를 받아야만 輸出할 수 있도록 指定된 物品은 總 328個品目으로서 그 類別品目數는 <表 1>과 같다.

<表 1> 類別輸出檢査指定品目數

製 品 類	品 目 數
1. 工 産 品 類	191
2. 林 産 物 類	108
3. 農 産 物 類	19
4. 酒類 및 入蔘製品類	10
計	328

그런데 輸出商品은 海外市場需要의 變動과 國內製造技術의 發展에 따라 그 量과 質이 變動하는 것이므로 輸出檢査指定品目이 언제나 同一할 수 단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現行 檢査指定品目中에서 檢査指定의 廢止, 新規追加 또는 指定檢査機關의 檢査指定變更等 調整이 要望되는 事項을 指定輸出業체에 대하여 調査하여 보았더니 <表 2>와 같이 나타났다.

<表 2> 檢査指定品目の 適正与否에 對한 業界意見

說 問 內 容	比 率(%)
適切하다.	40.4
檢査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어 不適切하다.	23.4
檢査해야할 것이 漏落되어 있어 不適切하다.	6.4
其他 理由로 不適切하다	6.4

無応答	23.4
計	100.0

資料：説問調査結果

即 業界의 意見에 따르면 検査指定品目이 適切하게 指定되었다고 보는 것이 壓倒的인 지 하지만 検査를 하지 않아도 될 것, 해야 할 것이 漏落된 것 및 其他의 理由로 36.2%나 不適切하다는 意見이 나타나고 있어 一部 改正의 必要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検査機關에서도 폐지할 것은 없어도 追加할 品目이 있다는 意見이 全体의 50%가 있는 것으로 보아 改正이 必要하다는 意見으로 기울어져 改正作業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検査機關의 意見에 따르면 検査指定品目中 一部는 他検査機關으로 부터 移管을 받아 處理하는 것이 検査業務의 円滑한 遂行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見解가 全体의 33%가 되며 아울러 安全輸送, 材料検査의 強化等의 意見과 함께 指定品目의 名稱에 對한 定義와 指定品目別 検査機關의 再調整이 必要하다고 하는 意見이 全体의 75%로 나오고 있다.

#### 4. 輸出検査減免制度의 現況과 問題点

前述한 바와 같이 많은 品目이 輸出検査를 畢하여야만 輸出할 수 있도록 現行輸出検査制度가 制定되어 있기는 하지만 輸出検査指定物品이 다음과 같은 境遇에 該當할 때에는 輸出検査를 免除받을 수 있는 特例가 마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現行輸出検査業務는 相当部分 簡素化되어 있기도 하다.

##### 가. 自動免除의 境遇

(가) 貿易去來法施行令第45条(輸出의 特例) 및 同施行令 第47条 第1項(輸出入의 特例中 輸出의 特例)의 規定에 依據 輸出하는 物品.

(나) KS 表示許可物品

##### 나. 다음과 같은 要件을 具備하고 工業振興庁長의 事前許可를 받은 境遇

(가) 國際立札에 落札되어 輸出하는 物品으로서 購買先이 指定하는 検査機關의 検査를 받도록 된 商品.

(나) 外國有名商社와 提携되어 그 商標를 附着하여 輸出하는 商品

(다) 全量輸出條件으로 許可된 外國人投資 企業에서 外國商標를 附着하여 輸出하는 商品.

다. 工業振興庁長으로 부터 自体検査業체로 指定된 境遇(指定要件은 <表3>, 指定業체의 現況은 <表4>를 参照할 것)

<表3> 自体検査許可業체가 實施하여야 할 品質管理 内容

實施事項	實施内容
1. QC 組織	QC 推進組織 및 從業員이 参与하는 QC 運動 基本組織.
2. QC 教育	經營者, QC 要員 및 從業員.
3. 社内標準化	会社標準體系, 会社標準履行改善, 輸出先이 提示한 標準管理.
4. QC 實施	
① 購買管理	受入検査, 在庫品管理, 外注下請 工場管理.
② 製造工程 管理	工場管理體系, 作業管理方法, 中間検査.
③ 検査管理	検査規格, 検査實施狀況, 検査結果活用, 検査員配置.
④ 試驗測定	計測機器의 精密度維持管理, 샘플 方法, 試驗測定技術.
⑤ 包裝, 保管 輸送	包裝材料, 包裝方法, 包裝單位, 保管條件, 輸送方法.
⑥ 크레임處理	크레임處理體系, 크레임狀況 및 措置内容

<表4> 自体検査許可業체 現況

製品種別	自体検査許可業체数	減免業체数	計
纖維	10	2	12
雜貨	10	3	13
電氣	4	8	12
機械	4	-	4
金屬	7	-	7
計	35	13	48

資料：工業振興庁

위와 같은 輸出検査減免制度는 輸出業務를 簡素化하고 自社가 만든 製品은 自社에서 責任을 지도록 한다는 点에서 매우 有益한 制度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만일 이들 検査減免許可業체나 自体検査許可業체가 許可要件을 誠實하게 維持, 또는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輸出商品의 品質과 對外聲價가 低下될 우려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輸出檢査減免許可 및 同事后管理規程에 의하면 이들 檢査減免許可業체와 自体檢査許可業체에 대하여는 定期 또는 隨時로 許可要件의 繼續維持与否와 品質管理狀態等 必要한 事項에 대하여 事后管理를 指定輸出檢査機關으로 하여금 實施하게 하고 그 결과를 工業振興庁長에게 報告하도록 하고 있으며 事后管理結果가 不良할 때에는 許可의 効力停止 또는 取消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輸出業체를 對象으로 한 調查結果에 따르면 自体檢査許可業체에 對한 事后管理時 指定輸出檢査機關이 2個이상 關聯되는 境遇 이들 2個이상의 檢査機關이 各各 事后管理를 實施함에 따라 受檢業체는 不便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輸出檢査減免 및 自体檢査許可業체에 對한 指定輸出檢査機關의 事后管理內容을 檢討하여 보니 이것은 <表 5>와 같이 規定되어 있으며 이 內容에 따르면 2, 3 및 5項과 같은 一部項目을 除外하고는 品目別로 特殊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事項이므로 關聯檢査機關이 重複하여 事后管理를 實施할 必要性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檢査業務의 簡素化를 위하여 檢討해볼 價値가 있는 問題라고 생각한다.

<表 5> 自体檢査許可業체의 事后管理內容

1. 年 1回 以上の 監督檢査.
2. 檢査設備에 對한 定期點檢.
3. 檢査方法 및 檢査結果에 對한 評價 및 指導.
4. 品質管理技法適用의 實態把握 및 改善指導
5. 不良要因別 技術隘路把握 및 指導.
6. 品質管理要員 및 自体檢査要員에 對한 再教育.
7. 同種業種別 QC 成果發表 및 技術세미나를 통한 相互 情報交流.

한편 이에 對한 業界와 檢査機關의 意見은 <表 6 및 7>과 같다.

<表 6> 輸出業체가 所定의 要件을 具備하여 自体檢査를 實施하는데 對한 意見

說 問 內 容	比率 (%)
1. 좋은 制度로서 自体檢査로 轉換함이 좋겠다.	53.2
2. 좋은 制度이나 許可要件이 까다롭고 事后管理가 複雜하다.	29.8
3. 品質管理士와 自体檢査要員確保를	

위한 對策이 먼저 講究되어야 한다.	10.6
4. 無回答 및 其他	6.4
計	100.0

資料：說問調查結果

<表 7> 自体檢査業체에 對한 事后管理 重複에 對한 意見

說 問 內 容	比率 (%)
1. 考慮할 價値도 없다.	83.0
2. 別途의 對策이 있으면 좋겠다.	17.0
計	100.0

資料：說問調查結果

業界의 一般의인 意見은 自体檢査가 좋기는 하나 許可要件, 事后管理, 品質管理士, 檢査要員의 養成 및 確保難等으로 가까운 時日內에 받아 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檢査機關에서는 自体檢査業체에 對한 事后管理問題에 對하여 各 機關別로 하고 싶다는 見解로 나타나고 있으나 一部는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도 實施하고 있는 바와 같이 受檢日字等을 調整하여 關聯檢査機關이 合同으로 實施하자는 建設의인 意見이 있기도 하다.

한편 輸出檢査를 業界에 委任하는 것과 現行대로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業界로서는 더 바람직한가를 調查한 결과는 自体檢査가 좋겠다는 意見이 圧倒的으로 많이 있으나 相當數의 業체에서는 慎重論을 펴 當分間은 現行대로 하고 漸次 企業체의 品質管理能力가 向上되면 自体檢査로 轉換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으로 檢査機關과 거의 같은 見解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輸出量이 增加하고 商品이 高級化하며 多樣해지는 境遇를 勘案하고 또 輸出商品의 Pattern이 輕工業製品에서 重工業製品으로 그 比重이 높아질 때에는 自体檢査로 漸次 轉換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企業체는 勿論 關係機關에서도 이에 對한 對策이 徐徐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輸出檢査基準의 現況과 問題點

輸出檢査基準은 檢査指定商品의 品質과 檢査項目別規格, 包裝等에 關한 檢査標準으로서 製造業者나 指定檢査機關이 다같이 지켜야 할 基準이기 때문에 現在 315個 品目에 對하여 商工部令으로 檢査基準이

制定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品目에 대하여 일일이 檢査基準을 標準化할 수는 없기 때문에 現行規程에 없는 檢査基準은 工業振興庁長의 告示 또는 工業振興庁長의 承認을 받아 指定檢査機關이 定하여 使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輸出檢査基準은 自國의 工業技術水準、需要者의 品質要求水準、輸出對象國의 生活水準、商慣習、製品安全에 關한 法規等 여러가지 品質形成의 要件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檢査基準의 制定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따를 것이다.

특히 電子部品과 같이 技術進步速度가 빠른 製品은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國家的인 規格制定이 어렵기 때문에 國際的인 認證制度가 IEC(國際電氣 標準會議)等에 의하여 推進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輸出檢査基準의 決定은 그렇게 容易한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強制的인 輸出檢査基準에 伸縮性을 賦与하기 위하여 輸出對象地域別 差等基準을 定하거나 또는 商工部令으로 定한 基準과 相異한 境遇라도 對外聲價의 維持向上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商工部長官 또는 工業振興庁長의 例外的 措置를 받을 수 있는 例外規定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輸出品의 檢査基準 및 檢査方法에 關한 規定 第10條 參照)

그런데 輸出業體를 対象으로한 調查結果에 의하면 一部の 檢査基準이 現實에 符合되지 않는 部分이 있으며 이에 對한 業體의 建議를 反映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에 對한 解決을 円滑히 하기 위하여 輸出業體와 關聯機關의 實務者級 協議機構를 設置하자는 意見이 나오고 있는바 이것은 檢討해볼 價値가 있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또한 現行 우리나라 輸出檢査基準과 方法이 適正하게 制定되어 이를 지켜나가기에 不便이 없는가에 對한 意見을 보면 輸出業體와 檢査機關 共히 絶對的으로 円滿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一部の 業體와 檢査機關에서 部分的인 改正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었다.

### 6. 輸出檢査方法의 現況과 問題點

現行規程에 의하면 輸出檢査方法은 (1) 檢査對象에

따라 品質檢査, 材料檢査, 製造工程檢査, 包裝檢査의 4 種類로 (2) 檢査項目에 따라 官能檢査, 計測檢査, 理化學試驗檢査의 3 種類로, 그리고, (3) 檢査方式에 따라 全數檢査와 샘플링檢査의 2 種類로 各各 区分되어 있다.

品質檢査는 輸出檢査의 核心이 되는 檢査로서 外觀, 치수, 重量, 形狀, 構造, 性能, 組織, 精密度, 作動, 壽命, 安全性, 品質表示等 輸出檢査指定 商品의 品質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素에 對한 檢査를 行하는 것이고, 材料檢査는 人絹織物이나 綿織物과 같이 그 物品의 素材가 되는 材料에 對한 品質檢査를 하지 아니하고는 正確한 檢査를 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檢査指定物品에 對하여 行하는 것으로서 材料檢査指定物品인 境遇에는 材料檢査에 合格하지 않으면 品質檢査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製造檢査는 般舶과 같이 設計로부터 製品의 完成에 이르기까지 各 段階를 繼續的으로 檢査하지 아니하고는 正確한 品質檢査를 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指定物品에 對하여 그 製造工程에 對한 檢査를 行하는 것이고 包裝檢査는 包裝도 亦是 品質의 保護와 維持에 매우 重要한 要件이 되고 있기 때문에 包裝에 對하여 特別한 配慮를 하지 않으면 그 物品의 品質의 維持가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物品에 對하여 包裝의 材質과 規格에 對하여 檢査를 行하는 것으로서 鉅產物을 除外하고는 모든 檢査指定商品에 對하여 實施하게 되어 있다.

官能檢査는 主로 物品의 外觀, 形狀, 組織, 作動, 性能等を 사람의 五官에 의하여 檢査하는 것으로서 現行規程에 의하면 纖維製品中 織物과 同製品, 工藝品, 毛物, 毛皮 및 同製品, 工產品等, 大部分의 檢査指定物品의 檢査에 適用하게 되어 있다.

또 計測檢査도 鉅產物을 除外하고는 모든 檢査指定商品의 檢査에 適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理化學試驗檢査는 鉅產物, 纖維製品, 工產品中 機械製品類, 化學工業製品類, 非鉄金屬製品類, 金屬製品類等 모든 工產品에 適用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必要한 試驗檢査機器의 操作과 試驗方法等도 KS 規格으로 制定되어 있다.

檢査方法은 또한 前述한 바와같이 全數檢査와 샘플링檢査로 区分되어 있는데 毛物, 毛皮와 旋盤機械를 除外한 모든 檢査指定品目에 對하여 샘플링檢査를 適用하게 되어 있으나 자수직물, 코오듀로이직물,

毛織物, 合成纖維, 방적사직물等 一部品目만이 検査項目에 따라 샘플링 또는 全數検査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輸出業체에 對한 調査結果에 의하면 検査品目の 價格이 高價인 物品에 對하여서는 샘플링検査基準을 緩和해 줄 것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品目에 對한 샘플링検査基準의 再檢討도 研究해 불만한 價値가 있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統計理論에 立脚한 샘플링検査方式은 検査費用의 節約과 検査業務量의 減少에 그 特徴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一部 業界에서는 包裝紙袋는 紙袋業体에서 原資材検査만을 強化하고 이것을 利用하여 製品을 포장하는 境遇의 検査는 加다롭지 않게 하여 包裝紙袋를 利用하는 業界에 不必要한 業務를 덜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一部 検査項目은 그것이 品質検査도 包裝検査도 아닌 検査項目이 包含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適切한 調整이 바람직하다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雜貨中에서 카비닛의 境遇)

### 7. 輸出検査機關의 指定現況과 問題點

現行輸出検査法에 의하면 輸出検査指定物品의 輸出検査는 商工部令第462号 指定輸出検査機關의 指定基準에 關한 規程에서 規定한 指定基準을 具備한 者로서 商工部長官의 指定承認을 받은 指定輸出検査機關에서만 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上記 規程에 의하면 輸出検査機關의 指定基準으로서 重要한 것은 (1) 上記 規程에서 規定한 検査品目別 試驗検査施設과 (2) 輸出検査法施行令 第1條에 規定된 検査品目別 検査員의 資格을 具備한 検査員을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數以上 確保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上記한 指定基準에 의거 1978年 1月現在 指定된 輸出検査機關은 政府検査機關이 4個 (但 検査指定物品中 農産物, 林産物, 酒類 및 인삼제품의 政府検査機關은 除外하였음.) 民間検査機關이 10個인바 그 内訳은 <表 8> 과 같다.

<表 8> 輸出検査機關의 指定現況

檢 查 機 関 名	検査品目數	
政 府 機 関	国立工業試驗院	1
	釜山慶南工産品検査所	64
	慶北工産品検査所	38
	忠南工産品検査所	37
民 間 檢 査 機 関	韓國纖維試驗検査所	13
	韓國織物試驗検査所	16
	大韓메리야스試驗検査所	16
	韓國電氣機器試驗検査所	25
	韓國精密機器센터	60
	大韓化學製品試驗検査所	36
	韓國輸出雜貨試驗検査所	25
	韓國船級協會	1
	韓國輸出品包裝試驗検査所	2
大韓鋁産物試驗検査所	19	

資料：工業振興庁

또한 工業振興庁에서 集計된 上記 指定検査機關의 77年度 輸出検査実績을 보면 政府検査機關의 検査実績은 거의 없고 10個 民間検査機關의 検査実績과 人員現況은 <表 9>와 같다.

<表 9> 民間検査機關의 77年度検査実績과 人員現況

檢 査 機 関 名	検査品目數	總員	検査員數	検査実績(千)
韓國纖維試驗検査所	13	90	45	563,644
韓國織物試驗検査所	16	112	58	1,062,223
大韓메리야스試驗検査所	16	100	40	664,374
韓國電氣機器試驗検査所	25	54	18	221,152
韓國精密機器센터	60	.	24	279,962
大韓化學製品試驗検査所	36	59	15	639,333
韓國輸出雜貨試驗検査所	25	140	76	899,472
韓國船級協會	1	.	.	.
韓國輸出品包裝試驗検査所	2	34	11	34,899
大韓鋁産物試驗検査所	19	14	7	62,700

資料：說問調査結果 및 工業振興庁

그런데 輸出業体와 上記 輸出検査機關에 對한 調査結果에 의하면 兩者 共히 検査員의 増員을 要求하고 있으며 또한 輸出業体에서는 検査員의 資質 (특히 製品特性面에 對한 技術的 知識) 向上을 要求하고 있다.

検査員의 増員은 輸出物量이 增加하고 있는 點을

勘案한다면 当然한 要求일런지 모르겠으나 検査員의 資質問題가 더구나 輸出業체로 부터 拳論되고 있다는 事實은 重要な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検査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検査員에 對한 專門教育및 海外派遣教育의 實施与否를 検査機關에 對하여 調査하여 보았더니 그 実績이 微微할 뿐 아니라 오랜 經驗과 教育에 의해 資質이 具備된 検査員은 輸出検査機關의 処遇貧弱과 個人的 發展性을 理由로 轉職하는 事例가 많이 發生하기 때문에 優秀한 検査員의 確保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輸出業체의 意見에 의하면 輸出検査機關이 輸出商品에 對한 検査業務뿐만 아니라 輸出商品의 不良要因別 技術隘路의 解決을 위한 研究를 行하므로써 이에 對한 技術指導를 實施하여줄 것을 要求하고 있으나 輸出検査機關側에서는 予算의 不足과 上記한 理由로 因하여 優秀한 検査員및 研究員의 確保가 어려운 形便이기 때문에 技術研究와 指導가 不振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有能한 検査員의 養成과 確保策이 講究되고 輸出検査機關의 機能이 検査業務뿐만이 아니고 固有技術에 對한 研究와 指導까지도 滿足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強化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調査結果에 의하면 輸入原資材에 對한 關稅環給을 위하여 輸入原資材使用量の 把握과 確認業務를 輸出検査機關에서 併行 担当하고 있기 때문에 輸出業체側에서는 節次上 不便하고 検査機關側에서는 業務量이 加重되고 있다는 것이 問題點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對한 對策도 講究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輸出検査機關이 現在 担当하고 있는 業務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依頼試驗
- 나. 外國 Buyer의 代行検査
- 다. 技術開發研究
- 라. 技術指導와 教育訓練
- 마. 調査, 訓練및 宣傳을 위한 海外派遣
- 바. 検査業務代行을 위한 PR活動
- 사. 其他: 關稅環給을 위한 原資材所要量證明等

以上과 같은 業務의 多岐化와 함께 一部 輸出業체에서 拳論하고 있는 検査機關및 検査員의 製品別 細分化 내지 專門化에 對하여는 그 必要性을 認定하나 採算性과 庶政刷新面에서 그리고 人間關係面에서

検査員의 懶怠, 不條理等の 問題點을 들어 困難함을 披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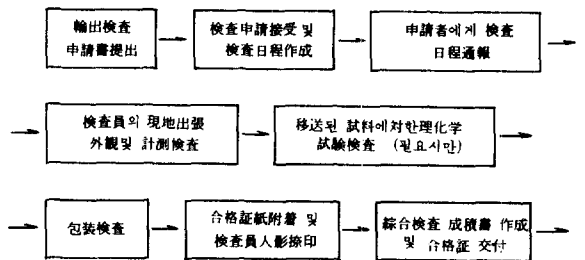
그리고 検査機關에서 實施하고 있는 企業체에 對한 技術指導는 現實的으로 検査員의 不足等の 問題로 크게 期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8. 輸出検査節次및 検査手數料率의 現況과 問題點

輸出検査法施行規則 第21條의 規程에 의하면 検査指定品目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그 物品을 通關하기 前에 指定検査機關에 検査申請을 함으로써 指定検査機關에서 配置하는 検査員의 検査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現行輸出検査節次를 보면(그림 1)과 같이 輸出業체의 輸出検査申請으로 부터 始作된다.

그리고 検査申請日字에 對한 制限은 없으나 大概 3日前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 그림 1 >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納期가 促迫하여 船積一日前에 検査申請을 하는 事例가 許多하기 때문에 検査業務遂行에 支障이 많다는 點이다. 따라서 輸出業체에서는 生産日程管理를 徹底히 하여 이러한 事例가 發生하지 않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輸出検査申請時에는 輸出検査法施行令 第3條의 規程에 의하여 検査手數料를 納付하게 되어 있으며 検査手數料는 輸出品目的 F O B 基準輸出價格에 當該輸出品目的 手數料率을 곱하여 算出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検査品目別 検査手數料率은 品目別로 약간

差異가 있긴 하지만 最低 0.1%에서 最高 0.2%까지로 比較的 低率로 定해져 있다.

그런데 輸出業체에 對한 調査結果에 의하면 一部業체에서는 現行 檢査手數料率이 높다는 意見이 나 오고 있으며 또한 檢査手數料에 對한 附加價值稅賦課를 免除하여 달라는 意見도 있었다.

輸出檢査節次 및 手數料와 試驗檢査設備에 對한 輸出業체의 意見을 綜合하여 보면(表10) 및 (表11)과 같다.

〈表10〉輸出檢査申請時 節次와 手數料에 對한 意見

說 問 內 容	比率(%)
(1) 檢査申請과 手數料의 納付節次가 複雜하다.	6.4
(2) 手數料가 너무 貴하다.	27.7
(3) 現行節次나 手數料에 滿足한다	46.8
(4) 其他 및 無回答	19.1
計	100.0

資料：說問調査結果

〈表11〉輸出檢査機關의 試驗檢査施設에 對한 業체의 意見

說 問 內 容	比率(%)
(1) 指定輸出檢査機關의 檢査施設이 優秀하다.	27.7
(2) 指定輸出檢査機關과 自社の 그것이 비슷하다.	12.8
(3) 自社の 檢査施設이 優秀하다.	19.1
(4) 指定輸出檢査機關의 檢査施設이 一部는 優秀하나 一部는 未洽하다.	36.2
(5) 其他 및 無回答	4.2
計	100.0

資料：說問調査結果.

그런가 하면 輸出檢査機關에서는 檢査手數料率을 높혀 주어 檢査機關의 試驗研究施設確保와 研究機能 充實化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助成금 또는 政府의 子算支援을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檢査手數料率의 現實化問題는 前述한 바 있는 有能한 檢査員의 確保 試驗研究機關의 擴大問題와 關聯하여 檢討하여야 할 問題點이라고 본다.

## 9. 輸出商品의 클레임現況과 問題點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輸出對象國에 對한 對外聲價를 判斷할 수 있는 클레임 現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大韓商事件裁協會를 통하여 1976년에 發生하였던 클레임 內容을 보면(表12) 및 (表13)과 같다.

〈表12〉原因別 클레임 發生 現況 (金額：\$)

原因	1976年度末現在		備 考
	件數	金 額	
品 質 不 良	242	2,311,161.42	
契 約 不 履 行	204	1,749,850.82	
手 數 料 未 拂	59	57,983.39	
規 格, 內 容 物 相 異	43	269,733.21	
數 量 不 足	23	31,727.00	
包 裝 不 良	11	1,000.00	
輸 入 代 金 未 拂	22	98,686.55	
其 他	97	463,765.67	
計	701	4,983,908.06	

〈表13〉品目別 클레임 發生現況(1976年度末 現在)

(金額：\$)

品目	金額	件數	品 質 不 良 品		備 考
			件數	金 額	
農產物	35	158,343.62	24	92,779.62	
水產物	29	81,425.59	11	68,250.09	
鉱產物	12	224,000.00	4	192,000.00	
雜 貨	197	654,381.22	74	515,423.07	
電 氣	19	119,508.00	8	5,800.00	
化 学	69	919,890.33	24	299,148.84	
織 物	66	570,393.60	19	273,182.85	
衣 類	77	832,038.73	39	646,748.24	
機械重工業	42	780,532.17	2	100,000.00	
其他工業品	155	643,394.00	40	153,828.71	
計	701	4,983,908.06	245	2,311,161.42	

上記 表에 의하면 클레임發生은 701件에 約5百萬弗로서 우리나라의 1976年度 輸出実績85億弗에 比하여 보면 約 0.6%밖에 되지 않지만 原因別로 檢討해 보면 品質과 契約不履行에 따른 클레임이 446 件에 4百萬弗이나 되며 金額面에서 80%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企業体에서는 品質管理에 보다 많



은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品目別 發生現況에서는 工產品의 比重이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産業工學的인 管理技術을 企業에 導入하여 定着시키기 위한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클레임 發生原因이 品質不良과 包裝不良을 除外하고는 輸出業者의 誠意와 注意만 기울리 하지 않는다면 問題로 提起될 性質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海外輸出을 担当하고 있는 企業체의 經營者와 管理者의 좀더 細心한 努力을 要望하지 않을 수 없으며 前近代의 思考方式을 하루 速히 脫皮하여 善良한 貿易去來가 이루어지도록 關係人의 覺醒을 促求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클레임의 發生은 制度的으로 強力히 規制하는 方便이 講究되어야 할 것인바 輸出支援金融의 一定期間 封鎖, 過怠料의 徵收等の 制度的이거나 行政的인 制裁가 加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10. 現行輸出檢查制度的 改善方案

輸出檢查는 輸出商品의 品質과 對外聲價의 維持向上을 圖謀하므로써 健全한 輸出貿易을 助成하기 위한 輸出貿易政策의 하나이다.

그러나 輸出檢查의 類型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輸出檢查法을 制定하여 輸出檢查를 國家統制의 強制檢查로 制度化하는 類型과 輸出商品의 品質管理를 業界의 任意에 맡기고 別途로 國家의 統制나 強制檢查를 行하지 않는 類型으로 大分할 수 있다.

輸出檢查를 國家統制의 強制檢查로 行하지 않고 業界의 自律的인 檢查로 委任하고 있는 國家는 美國, 英國, 西獨, 伊太利 등과 같은 工業水準이 높은 國家들인데 이들 國家는 企業의 生産施設, 製造技術 및 商道義가 向上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競争에서도 이길 수 있는 健全한 企業基盤과 技術을 企業 스스로가 充分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複雜한 國家的인 統制節次를 制定하지 않고도 各 企業의 自律的인 品質管理制度에 依拠 自社製品에 對한 對外聲價의 維持向上이 可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輸出檢查를 國家統制에 의한 強制檢查로 行하고 있는 國家는 日本, 台灣, 印度, 比津賓 등과 같이 日本을 除外하고는 比較的인 工

業水準이 낮은 國家들인바 이들 國家는 企業自體의 經營方針이나 資本, 技術 및 品質管理体制等이 確固하지 못하기 때문에 國家統制의 輸出檢查를 制度化하므로써 企業에게는 品質向上의 刺戟을 주고 外國의 購買者에게는 國家가 認定하는 檢查에 合格하였다는 信賴感을 주므로써 輸出貿易振興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強制輸出檢查制度의 趣旨라 하겠다.

그러나 本論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家統制의 輸出檢查制度를 扞하고 있는 以上 企業의 自律的인 品質檢查로 輸出檢查를 代身하고 있는 國家에 比하여 時間, 費用, 節次等 여러가지 面에서 複雜하고 非能率的인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現行輸出檢查制度上的 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한 長期的인 對策은 輸出商品의 品質管理를 業界의 任意에 맡기고 企業의 自主檢查로 輸出檢查를 代身하는 方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르기 위하여는 모든 企業이 短期的인 眼目에서의 利潤追求에만 汲汲하지 말고 長期的이고도 國家的인 次元에서 自社製品은 自社가 責任을 진다는 經營方針下에 科學的인 管理技術(특히 IE 技術과 SQC)을 導入하여 良質의 製品을 經濟的으로 生産할 수 있는 科學的인 管理風土를 助成하므로써 自主檢查體制로 轉換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선은 모든 輸出業者가 義務的으로 科學的인 管理技術을 도입하여 活用하도록 法制化하므로써 自主檢查制度로 轉換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同時에 短期的으로는 本 調查研究結果에 나타난 諸般 問題點을 解決하고 現行 輸出檢查制度를 簡素化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1) 輸出檢查品目別 檢查項目에 對한 檢查基準의 一部 改正: 原料, 原副資材의 檢查強化, 差等檢查基準의 制定活用
- (2) 輸出檢查減免業者 및 自體檢查許可業者에 對한 重複 事後管理의 調整: 事後管理日程 및 同책크리스트의 調整으로 一元化.
- (3) 輸出檢查協議機構의 設置 運營: 關係機關, 輸出檢查機關, 業者等의 實務者級으로 構成.
- (4) 輸出商品에 對한 샘플링檢查基準의 調節: 檢查費用節約과 檢查業務量의 減少方案을 講究.
- (5) 優秀檢查要員 確保를 위한 制度的인 體制確立 및

処遇改善：輸出検査機関 및 輸出業体検査要員の 養成 및 確保策 講究 ( 専門 養成機関의 設置) 技術指導 및 製造技術研究의 併行, 輸出検査機関의 機能의 専門化와 拡大.

(6) 輸出検査手数料率의 調整 및 試驗検査機器의 代替 乃至 補充：老朽施設의 代替 및 補充, 合理的인 検査料의 策定

(7) IE, QC 技法의 活用과 土着化를 위한 制度的 措置：클레임原因除去, 原価節減, 品質向上等의 手段으로 活用하도록 法制化.

(8) 輸出検査의 自体検査体制로의 轉換을 위한 組織的 準備強化：輕工業製品에서 重化學工業製品으로 轉換 및 輸出商品의 多樣化에 對備.

(9) 輸出業体の 納期管理 徹底를 위한 科學的 管理法의 積極 活用.

以上과 같이 現行輸出検査制度上 露呈되고 있는 問題點을 解決하고 輸出検査가 効率的으로 施行되도록 現行輸出検査制度의 一部를 改善함과 同時에 모든 輸出業体에 對하여 品質管理技法의 導入 活用을 義務化하도록 法制化하므로서 漸次的으로 自主検査制度로 轉換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適當한 時期가 되면 國家統制의 輸出検査를 廢止하는 方案을 하나의 改善方案으로 考慮할 수 있다.

또 다른 改善方案으로 考慮할 수 있는 것은 輸出人을 專担하고 있는 綜合貿易商社로 하여금 自社가 輸出하는 商品에 對한 品質과 對外聲價의 維持向上은 自社가 責任을 지고 實施하여 나가게끔 輸出検査에 對한 責任을 賦課하는 方案이다.

다시 말하면 綜合貿易商社로 하여금 商工部令 第462號 指定輸出検査機關의 指定基準에 關한 規程에서 規定한 指定基準을 具備하고 商工部長官의 指定承認을 받아 自社에서 取扱하는 輸出品目에 對한 自体輸出検査機關을 設立하게 하고 自社가 輸出하는 商品에 對한 輸出検査를 自律的으로 實施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方案은 一見 指定輸出検査機關의 亂立을 招來하여 輸出検査의 權威를 失墜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런지 모르나 輸出検査物量의 增加에 따른 現行 指定輸出検査機關의 業務量의 增加 및 이에 따른 輸出検査機關의 規模의 補充 및 検査員의 製品別 専門化가 解決되어야 할 問題點으로 台頭되는 現時點에서 볼 때 이러한 現存問題點의 解決뿐 아니라 輸出

検査機能의 専門化와 自主検査意識의 鼓吹를 위하여 매우 適合한 改善方案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輸出商品의 重化學工業製品으로의 轉換과 多樣化 및 高級化에 따른 現存 輸出検査機關의 検査設備補充이 時急한 點을 勘案하여 불때 이에 必要한 検査設備을 이것을 輸出하는 綜合貿易商社로 하여금 確保케 한다는 面에서 불때 이 方案은 檢討하여 不 價值가 있다고 본다.

## 11. 結 論

輸出商品의 品質과 對外聲價의 維持向上의 健全한 輸出貿易을 助成할 目的으로 施行되고 있는 現行 輸出検査制度에는 本 調查研究結果 施行上 많은 問題點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國家統制下의 輸出検査를 施行하고 있는 以上 이러한 問題點을 完全히 解消하기란 그렇게 容易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最善의 解決方案은 모든 輸出業体로 하여금 品質管理技術을 義務的으로 導入, 活用케 하므로서 企業의 自主検査로 輸出検査를 代身할 수 있게끔 誘導하는 方法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長期的인 眼目에서의 解決方案이지 現存하는 問題點은 解消할 수 없다.

그러므로 現行輸出検査制度의 改善方案으로 우선 모든 企業으로 하여금 品質管理의 導入活用을 義務化하도록 法制化하여 自主検査制度로의 轉換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本 調查研究結果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10節에서 提示한 方法에 의거 改善 補完하여 나가거나 또는 綜合貿易商社로 하여금 自社가 輸出하는 商品에 對한 輸出検査는 自社가 責任지고 할수 있게끔 自体輸出検査機關을 設置케 하는 것이 現行 問題點 解消에 適切하다고 본다.

## 参与文献

1. 輸出検査法(法律第2541号)
2. 輸出検査法施行令(大統領第8207号)
3. 輸出検査法施行規則(商工部令第474号)
4. 輸出検査法 第3条의 規定에 의한 輸出品 指定에 關한 規則(商工部令第461号).
5. 輸出検査法 第3条의 規定에 의한 物品(酒類 및 人參製品)指定에 關한 件. (商工部令第372号, 財務部令第897号)

6. 輸出検査法 第3条의 規定에 의한 物品 指定에 관한 件(部令 第279号).
7. 輸出林産物の 物品指定 및 検査基準에 관한 件(商工部令 第400号, 内務部令 第135号).
8. 輸出検査減免許可 및 同事后管理 運營要領(商工部告示 第76-38号).
9. 輸出品의 検査基準 및 検査方法에 관한 規則(商工部令 第504号).
10. 工芸品輸出検査基準 및 検査方法中 適用範圍 品目(商工部告示 第5065号)
11. T. Q 品目의 輸出検査業務取扱要領(商工部 告示 第10423号).
12. 指定輸出検査機關의 指定基準에 관한 規則(商工部令 第462号).
13. 林産物輸出検査機關指定(工業振興庁告示 第115号).
14. 工産品輸出検査手数料率(商工部告示 第77-14号).
15. 輸出林産物検査手数料率(工業振興庁告示 第1039号).
16. 輸出工産品依頼検査業務規定(商工部告示 第2720号).
17. 工産品輸出検査手数料率에 관한 計算(商工部 告示 第8224 号).
18. 貿易去來法(法律第2781号).
19. 貿易去來法施行令(大統領令 第8283号).
20. 貿易去來法施行規則(商工部令 第492号).